「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2019. 5.

고 용 노 동 부

1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절차 명확화 (안 제3조)

□ 개정대상 : 시행규칙

□ 개정배경 및 필요성

○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정사업* 중 고용영향평가 절차를 규정할 필요

*「국가재정법」 제31조 세출예산사업, 동법 제66조 기금사업

□ 개정내용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절차 규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안 요구 전***까지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안 요구 시 제출

* (국가재정법 제31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영향평가 지원

○ 기타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 기대효과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운영근거 마련

□ 규제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고용영향평가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까지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조문 정리

□ 개정대상 : 시행규칙

□ 개정배경 및 필요성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조문들을 법조문 순서에 맞춰 정리할 필요

○ 시행규칙 조문 내용들도 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리

□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제1조(목적)	▪ 현행과 동일
▪ 제1조의2(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 법 제15조의2 제2항	▪ 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 법 제15조의6 제2항
▪ 제2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 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1조	▪ 제6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 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1조
▪ 제3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 법 제9조의2제1항	▪ 제2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 법 제9조의2 제1항
▪ 제3조의2(고용유지지원) * 법 제29조	▪ 제5조(고용유지지원) * 법 제29조
▪ 제4조(규제의 재검토) * 시행규칙 제2조	▪ 제7조(규제의 재검토) * 시행규칙 제5조
▪ 신설	▪ 제3조(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절차) * 법 제13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형태 현황을 사업장별로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형태 현황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 ---------- 제15조의6제2항-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고용안정정보망은 최근 3년(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사업주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② ---------- ----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 -------. ------ 고용정보시스템---------- ---------- ----------

을 말한다)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을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시함으로써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갈음할 수 있다.	----------. ③ ---------- ---------- ---------- ---------- ---------- ---------- -------- 법 제15조의6제1항- ----------.
제2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 (생 략)	제2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3조의2 (생 략)	제5조 (현행 제3조의2와 같음)
제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 ---- 제6조---------- ---------- ---------- ---------- ---------- ---------- --------.